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）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며,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-아 래-

1. **전자등록일(2020년 10월 16일)**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**전자등록일 3영업일 전(2020년 10월 13일)**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주주 조치 사항

-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 -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일 3영업일 전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3. 당사(발행인)는 **전자등록일의 직전 영업일(2020년 10월 15일)**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2020년 09월 15일

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대표이사 박 래 익

